

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0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4. 16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소년소녀가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포함되므로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,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의 기준이 광범위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장학생의 지급대상기준 변경(안 제2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
- 입법예고 : 고성군공고 제2003-89호(2003.3.11~2003.3.30), 특기할 사항 없음

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중 “영세농어민 자녀, 소년소녀가장 · 세대원중”을 “영세농어민 자녀중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중 “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”를 “천재지변이나 각종재해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읍 · 면장이 인정하는 자녀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-----, <u>영세농어민 자녀, 소년소녀가장 · 세대원중</u>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</p> <p>2. <u>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</u>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2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, <u>영세농어민 자녀중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<u>천재지변이나 각종재해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육·면장이 인정하는 자녀중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